『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핵심 설명서

1 기본정보

최고금리 (2026.10.01.기준, 연이율, 세금공제 전)	연 3.85%(DB) 연 3.85%(DC/IRP)	➢ DB : 12개월 기준 ➢ DC/IRP : 12개월 기준 (상세 금리는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 가입자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 디폴트옵션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이내 연, 월 일		
최저가입금액	1원 이상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재 예 치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분할지급	가능	만기(중도)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 횟수 산정에서 제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지급	
제한사항	담보 제공 불가		
예금자보호	DB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	
	DC/IRP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	

2 유의사항

☞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광주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1600-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약정이율 × 일수(신규일~만기일 전일)/365
중도해지이율	최저 연 0.01% (경과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및 연금지급,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광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5상품0020호(2026.05.11)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은 ①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만 65세 이상 개인입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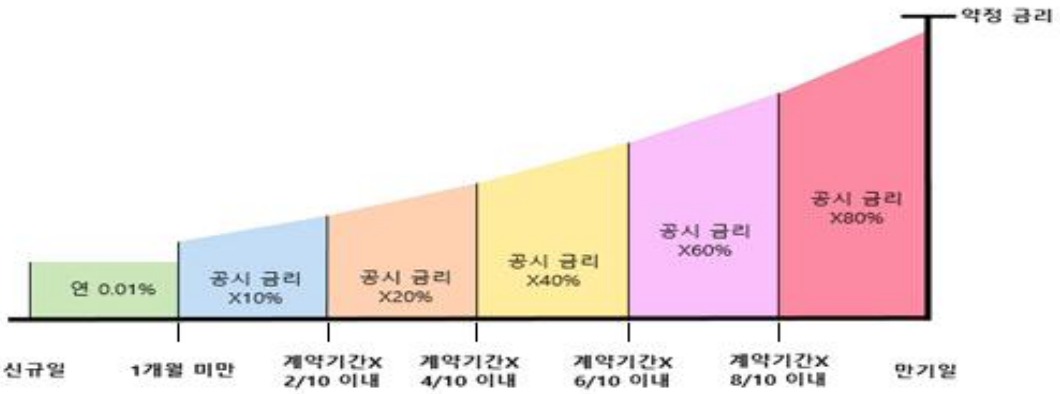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수령하시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가 입 대 상</td><td>▪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 가입자</td></tr>
<tr><td>상 품 유 형</td><td>▪ 정기예금</td></tr>
<tr><td>거 래 방 법</td><td>▪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td></tr>
<tr><td>가 입 금 액</td><td>▪ 1원 이상</td></tr>
<tr><td>계 약 기 간</td><td>▪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 디폴트옵션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이내 연, 월 일</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td></tr>
<tr><td>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td><td>▪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td></tr>
<tr><td>가입기간 . 이율
(2026.10.01.기준, 연이율, 세전)</td><td>
<table>
<tr><th>이 율</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h>18개월</th><th>24개월</th><th>30개월</th><th>36개월</th><th>60개월</th></tr>
<tr><td>DB형</td><td>2.80</td><td>3.10</td><td>3.85</td><td>3.70</td><td>3.70</td><td>3.60</td><td>3.20</td><td>2.50</td></tr>
<tr><td>DC형/IRP형</td><td>2.80</td><td>3.10</td><td>3.85</td><td>3.70</td><td>3.70</td><td>3.60</td><td>3.20</td><td>2.50</td></tr>
</table>
<table>
<tr><th>이 율</th><th>36개월</th></tr>
<tr><td>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기예금</td><td>3.20</td></tr>
</table>
※ 이 예금의 이자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td></tr>
<tr><td>추가 우대금리</td><td>▪ 해당사항없음</td></tr>
</table>

<table>
<tr><td>만기 후 금리</td><td>▪ 해당사항없음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만기 시 자동갱신)</td></tr>
<tr><td>만기이자
산출근거</td><td>▪ 신규일(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이율)로 계산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예금액 × 약정금리 × (예치일수/ 365)

</td></tr>
<tr><td>중도해지금리
(2026.10.01.기준,
연이율, 세전)</td><td>
<table>
<tr><th>보유기간주1)</th><th>DB형,
DC형 / IRP형</th><th>퇴직연금
디폴트옵션용 정기예금</th></tr>
<tr><td>1개월 미만</td><td>연 0.01%</td><td rowspan="6">공시금리주2) x 80%</td></tr>
<tr><td>계약기간의 2/10 이내</td><td>공시금리주2) X 10%</td></tr>
<tr><td>계약기간의 2/10 초과 ~ 4/10 이내</td><td>공시금리주2) X 20%</td></tr>
<tr><td>계약기간의 4/10 초과 ~ 6/10 이내</td><td>공시금리주2) X 40%</td></tr>
<tr><td>계약기간의 6/10 초과 ~ 8/10 이내</td><td>공시금리주2) X 60%</td></tr>
<tr><td>계약기간의 8/10 초과</td><td>공시금리주2) X 80%</td></tr>
</table>
주1) 보유기간 : 보유일수 / 계약일
주2) 공시금리 : 신규 가입일 당시 당행이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이며 우대금리 제외</td></tr>
<tr><td>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td><td>▪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td></tr>
<tr><td>이자계산방법</td><td>▪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원미만 절사)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신규일~만기일 전일)/365</td></tr>
<tr><td>계약의 해지</td><td>▪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또는 해지 가능</td></tr>
<tr><td>예금 해지 시
불이익</td><td>▪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td></tr>
</table>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사유 1. 가입자의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라.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수탁자의 사임 마. 가입자 사망 4.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5. 당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특별중도해지이율 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단, 4)와 6)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인 계약 :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2. 계약기간이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인 경우 (1) 예치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 12개월 계약기간 이율 (2) 예치기간이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24개월 계약기간 이율 (3) 예치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36개월 계약기간 이율
재예치	1.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는 경우에는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금액으로 하여 당 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가 가능합니다. 2.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3. 확정기여형(DC)제도 및 IRP(기업형, 개인형)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됩니다.) 4.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 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5.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예금자보호 여부</td><td>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td><td>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td></tr>
<tr><td>확정급여형(DB)

</td><td>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연계·제휴서비스</td><td colspan="2">▪ 해당사항 없음</td></tr>
<tr><td>분할지급</td><td colspan="2">▪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함.</td></tr>
<tr><td>세제혜택</td><td colspan="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td></tr>
<tr><td>거래제한</td><td colspan="2">1)공동명의 : 불가 2) 담보등록, 질권설정 및 양도 : 불가</td></tr>
<tr><td>위법계약해지권</td><td colspan="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수수료, 위약금 등의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td></tr>
<tr><td>자료열람요구권</td><td colspan="2">▪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nfl 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td></tr>
<tr><td>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td><td colspan="2">▪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전에 제공되는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편(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33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j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